

의안번호	2201807
의 퇴 인	박상웅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1.
추 계 번호	24D2037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(보육기반의 확충) 및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	－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대학 등의 교육시설(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)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	－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「도로법」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도로의 건설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8조의2(조세의 감면)	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(보육기반의 확충) 및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(주거·교통기반의 확충)	
3	안 제28조의2(조세의 감면)	

2. 상세 사유

□ 인구감소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환경, 대학 등 교육시설의 유지·관리와 개선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도로의 건설과 유지·관리 비용 지원 (안 제21조·제22조·제24조·제28조의2)

○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의 개선과 대학 등의 교육시설(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¹⁾에 따른 교육시설)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·제22조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개소수와 1개소당 지원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내의 어린이집 개소수를 예측하기 곤란함
- 참고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2024년 예산으로 7,38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증·개축 4개소, 개·보수 518개소, 장비비 256개소를 지원중임.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의 어린이집 3,749개소(2024.9. 기준)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요청한 183개소에 1,852백만원(2024년 기준)을 지원중임
- 유치원·초등학교·고등학교·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개소 및 개소당 지원 경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기관 및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○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의 건설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24조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도로의 개수 및 공사비, 유지·관리비, 국가의 지원 비용

1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육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.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라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(국방·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)

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

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도로의 개수 및 공사비, 유지·관리비, 국가의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, 조세 감면 대상 및 규모를 구체화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